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정 2000. 8. 5 대통령령 제16946호

개정 2002. 6. 3 대통령령 제17621호

제1조(목적)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

관 · 과학기술부장관 · 문화관광부장관 · 농림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환경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국무조정실장 및 환경분야를 관장하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하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라 한다)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환경보전과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지명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복지노동수석비서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임기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과제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직원의 파견) 위원회는 사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주요정책과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주요 중·장기계획
2. 제1호의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광역개발계획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계획
3. 기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주요정책 및 계획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중·장기계획 및 통보시기는 별표와 같다.

⑤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계획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 및 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기타 직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3 대통령령 제1762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의 통보시기란에 규정된 협

의·심의 절차가 완료되거나 정책·계획 등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제30호의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표]

주요 중·장기계획 및 통보시기(제11조제4항관련)

계획의 종류	통보시기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정심의회 심의전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 심의전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전

1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전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전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 수립시
1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전
18.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수립시
2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4.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전
25.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급계획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전
29.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0.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1.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2.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전
33.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4.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5.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6.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7. 해양개발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기본계획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9.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0.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연안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